

신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 758)의 주요 내용에 관한 연구*

박 석 재**

-
- I. 서 론
 - II. 청구보증 및 준거법
 - III. 신 청구보증 통일규칙의 주요 내용
 - IV. 결 론
-

주제어 : 청구보증통일규칙, 청구보증, 독립보증, 보증

I. 서 론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 458)은 1992년에 공표된 이후 18년간 이용되어 오다가 2년 6개월의 개정작업을 거쳐 2009년 11월의 국제상업회의소(ICC) 은행위원회에서 개정판이 승인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청구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교수

보증 통일규칙(URDG 758)¹⁾이 시행되고 있다.

신 규칙은 중소기업의 은행과 기업들이 보증서와 신용장의 사무를 동일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동일개념의 표기에 본 규칙과 신용장 통일규칙(UCP)에서 다른 용어가 이용되거나, 조문구성이 상이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고방식 하에 본 규칙 개정 시에 UCP의 용어 및 조문구성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였다.²⁾ 이 결과 신 규칙의 내용은 현행 규칙의 단순한 개정판보다는 신설 규칙이라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정도로 과거의 규칙과는 전혀 상이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³⁾ 신 규칙과 관련해서 국제적으로는 국제상업회의소의 정기 간행물인 DCInsight를 통해 세계적인 은행 전문가들에 의한 많은 글들이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박세운·한기문·허해관, 정홍식, 채진익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⁴⁾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URDG 758의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무 입장에서 바라본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URDG 758의 주요 내용을 실무 입장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청구보증의 개념 및 준거법에 관하여 고찰한 후 URDG 758의 내용 중 실무상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내용을 총칙, 지급 청구, 통지 및 조건변경, 불가항력 및 양도의 네 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며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서 국내외 학자들 및 실무자들의 최신 문헌을 고찰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취하기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URDG 758의 적용과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함으로써 무역업계 및 은

1)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758, 이하 URDG 758이라 함.

2) 後藤守孝·橋本 徹,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2(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7호, 2010. 10, p.72.

3) 飯田勝人, “新「請求拂保證に関する統一規則(URDG758)」における重要條文の要旨” 『金融法務事情』, 제1899호, 2010. 6, p.48.

4) 박세운·한기문·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개정 동향-제3차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9. 8.;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RDG) 개정안 제3차 초안의 주요 내용”, 『경영법률』, 제20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10.; 채진익, “URDG 하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요건과 그 일치성 기준”,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5.

행업계의 관계자들이 청구보증 거래를 할 때 참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청구보증 및 준거법

1. 청구보증의 개념

보증에는 부종성을 가지는 보증과 부종성을 가지지 않는 독립보증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부종성을 가지는 보증에 관하여 검토하여 보면, 보증회사에 의하여 주로 개설되는 보증(accessory or conditional bond)은 기본계약에 부종적인 계약이며, 따라서 보증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분쟁은 단지 주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의무의 결정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⁵⁾ 즉, 보증에서의 보증인은 기본계약상의 주채무자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2차적인 책임을 진다.⁶⁾ 이 결과 부종적 보증하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원인계약상의 항변을 원용하는 것이 가능하다.⁷⁾ 따라서 만일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불이행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건축가, 기술자에 의한 증명, 중재판단, 판결 등)을 채권자 측으로부터 제시받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독립보증(independent guarantee)이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무역에서 출현하였으며,⁸⁾ 만일 보증서의 제조조건이 충족된다면 지급하겠다는 보증인에 의한 제1차적이고 독립적인 확약을 의미한다.⁹⁾ 독립보증은 보증수

5) S. J. Pearlman, "Types of Non-Trade Letters of Credit Used in Today's Marketplace", *A Practical Guide to Letters of Credit*, Executive Enterprises Publications Co. Inc., New York, 1990, p.20.

6) H. Harfield, "Guarantees, Standby Letters of Credits, and Ugly Duckling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6, 1994, p.201.

7) 相澤吉晴, 『銀行保證狀[スタンドバイ信用狀]と國際私法』, 大學教育出版, 2003, p.1.

8) J. E. Byrne & H. Burman, "Introductory Note", *International Law Materials*, Vol.35, 1996, p.737.

9) L. D'Arcy, C. Murray & B. Cleave, *Schmitthoff's Export Trade*, 10th ed., Sweet &

혜자에게 신속한 재정상의 구제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제1차적이며 성질에 있어서는 서류부, 즉 일치서류제시를 조건으로 한 지급확약이다.¹⁰⁾ 이 결과 독립보증 하에서 보증수혜자의 지급요구 권리는 보증조항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은행은 그 기초가 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항변을 원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¹¹⁾

독립보증 및 기능상 독립보증과 동일한 기능을 하며 주로 미국에서 사용 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이 국제사회에서 사용된 것은 1970년대 초이었다. 이 시기에는 중동의 산유국이 석유가격의 급등에 의하여 풍족하게 되고, 선진국 기업에게 도로, 공항, 항만설비 등의 인프라의 정비와 주택, 병원, 통신망, 발전소 등의 공공사업, 공업·농업 프로젝트, 방위시설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발주하였다. 독립보증은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활발하게 이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청구가 있는 즉시 지급되어야 하는 청구보증(first demand guarantee or demand guarantee)¹²⁾이 주로 이용되었다. 청구보증은 무조건보증(unconditional guarantee)이라고도 칭해지며, 보증수혜자는 채무자의 불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은행으로부터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보증은 채권자에게 악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하지만, 당시의 바이어 시장의 역학관계에서는 부득이 하였다. 독립보증에는 청구보증 외에 제3자로부터의 서류의 제출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증과, 중재판정 또는 법원 판결의 제출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보증이 있다. 따라서 독립보증과 청구보증은 동일하지 않으며 청구보증은 독립보증의 하나의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¹³⁾

즉, 청구보증이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급청구서 및 기타 서류의 제시

Maxwell, 2000, p.215.

10) R. Goode,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shing S.A., 1992, p.8.

11) 新堀 聰·椿 弘次, 『國際商務論の新展開』, 同文館出版, 2006. 12, p.156.

12) 청구보증은 다음과 같은 문언이 있는 보증이다. “We hereby irrevocably and unconditionally undertake to pay to you upon your first written demand...”, “Any claim or claims will be paid on your first demand ...”, “We will pay on first demand by the beneficiary without any conditions ...”(經濟法令研究會 編, 『ゼミナル外爲實務Q&A』, 經濟法令研究會, 2006. 11, p.230.)

13) 新堀 聰·椿 弘次, 전계서, p.157.

가 있다면, 계약의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서 개설은행이 즉시 보증수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약속한 보증서이다.¹⁴⁾ 상술하면 일반적으로 청구보증은 원인계약상의 채무로부터 독립하고 있으며 이것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독립성 및 보증서가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제시에 의해서만 청구를 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서류거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청구보증의 두 가지 특성을 보증인인 은행 측면에서 본다면 은행은 통상 기본 거래의 전문가가 아니며, 상업위험에 연루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은행이 개설하는 보증서는 필연적으로 독립보증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¹⁵⁾

2. 청구보증의 준거법

청구보증의 준거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국내법의 강행규정이 URDG보다 우선하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청구보증에 관한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없다. 따라서 URDG 758과 국내법 사이의 충돌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¹⁶⁾

이러한 이유로 청구보증의 준거법으로 활용 가능한 국제 규칙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주로 화환신용장의 준거규칙으로서 사용되는 UCP 600이다. UCP는 1983년 개정판인 UCP 400 이후 보증용도로 사용되는 스탠드바이 신용장에도 이용 가능한 취지로 변경된 이후 오랫동안 보증목적에 이용되는 국제규칙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UCP는 원래 화환신용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UCP의 어떠한 규정이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되는가에 관해서는 개별 사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며,¹⁷⁾ 명료하게 언급되지 않는 등 보증목적에는 적합하지 않

14) 經濟法令研究會 編, 전제서, p.229.

15) 박석재, “국제 비즈니스 계약에서의 보증수단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5, p.208.

16) P. Andrieu, “URDG 758 : a work in progress”, *DCInsight*, Vol.16, No.4, ICC, 2010. 10/12, p.14.

17) 일반적으로 모든 신용장에 공통하는 조항인 총칙과 정의,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은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적용가능하지만, 다른 조항들은 적용이 불확실하다(박석재,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법으로서의 UCP 500과 ISP98의 비교연구”,

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둘째는 주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규칙으로서 미국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스탠드바이 신용장 통일규칙(ISP 98)이다. 그런데 ISP 98은 1998년에 스탠드바이 신용장을 위한 국제 규칙으로서 시행되었지만, 법률상 은행에 의한 보증서 개설이 불가능한 미국에서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관습을 토대로 작성된 경위 때문에 이용이 북미에 치우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¹⁸⁾

셋째는 청구보증 통일규칙(URDG)이다. 동 규칙은 1992년 시행 당초에는 그다지 많이 이용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유럽과 中近東을 중심으로 그 이용이 널리 확산되고, 또한 이용경험의 축적에 따라 그 유효성이 평가되어 근래 다른 지역에서의 이용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국제규칙에 준거하지 않는 보증을 제외한다면 세계적으로는 UCP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UCP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증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ISP 98은 그 이용이 북미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실제로 은행이 개설하는 보증서는 청구불조건의 보증서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양해가 얻어진다면, 청구보증 통일규칙에 준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⁹⁾

Ⅲ. 신 청구보증 통일규칙의 주요 내용

URDG 758은 총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언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고려되는 주요 내용을 편의상 총칙, 지급 청구, 통지 및 조건변경, 불가항력 및 양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8, p.300.

18) 後藤守孝·橋本 徹, “ICC請求拂保證統一規則(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の改訂について(上)”, 『銀行法務21』, No.719, 2010. 8, p.46.

19) 經濟法令研究會 編, 전계서, p.229.

1. 총칙

(1) URDG의 적용

청구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함)가 URDG 758에 준거하여 개설되기 위해서는 URDG 758에 준거한다는 취지의 표현이 보증서 내에 삽입되는 것이 필요하다. UCP 600 제1조의 규정과 조화를 맞추어 각각의 보증서에서 URDG 758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변경 또는 배제하는 것이 가능한 취지의 규정(제1조 a항)이 새롭게 본 규칙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보증서에서 URDG 758의 규정을 부분적으로 변경 또는 배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가 되는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보증서에 기초하여 URDG 758 준거의 보증서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역보증서는 비록 URDG 758 준거문언을 기재하고 있지 않는 경우이더라도 URDG 758의 적용을 받는다(제1조 b항 전단). 이 규정은 역보증인의 지시에 따라서 URDG 758 준거의 보증서를 개설한 보증인이 역보증서에 기초하는 이행청구를 행하는 경우에 동일 규칙에 따른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부적합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단, 역보증서가 URDG 758이 아닌 다른 규칙에 준거하는 것, 또는 URDG 758에 준거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반대 즉, 역보증서가 URDG 758에 준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서가 URDG 758에 준거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제1조 b항 후단). 따라서 역보증서에는 보증인에 대한 URDG 758 준거의 보증서 개설지시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URDG 758 준거의 보증서 개설을 의뢰하는 지시인은 URDG 758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승낙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1조 c항). 더구나 보증서의 개설의뢰 그 자체는 보증 범위 이외의 사항이므로 지시인과 보증인과의 사이의 보증서 개설계약에는 URDG 758은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설된 보증서 또는 역보증서에 ‘URDG’에 준거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지만, 출판물번호(‘458’ 혹은 ‘758’)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신 규칙인 URDG 758에 준거하는 것으로 된다(제1조 d항). 그런데 2010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날짜는 보증서 또는 역보증서의 개설날짜이며, 보증서 또는 역보증서의 발신일과 발송일

이 아니라는 점에 실무상 유의하여야 한다.²⁰⁾

(2) 정의 및 해석

URDG 458에는 용어 정의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보증서, 개설의뢰인, 보증수혜자, 지시인 정도에 국한된 용어 정의가 전부였으며 해석에 관한 별도의 조항은 없었지만, URDG 758은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의 및 해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규칙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줄 것이며, 또한 정의된 용어들의 오해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²¹⁾ 이 중 실무상 유의하여야 할 내용은 이하와 같다.

① 청구보증/보증

청구보증 또는 보증이란 ‘일치하는 청구’와 상환으로 지급을 행한다는 약속을 의미한다. (demand) guarantee라는 제목이 없더라도 본 규칙에 준거한 보증이라면 Bid Bond나 Letter of Credit이든 제목 여하에 상관없이 본 규칙의 보증에 포함됨에 유의하여야 한다.²²⁾

② 개설의뢰인과 지시인

개설의뢰인이란 보증수혜자와의 사이의 원인계약에 기초하는 채무자로서 보증서 중에서 명시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지시인이란 보증인 또는 역보증인에 대하여 보증서 또는 역보증서의 개설지시를 행하고 그 보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개설의뢰인과 지시인은 동일하지만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다.²³⁾ 즉, 개설의뢰인의 모 회사가 보증서 개설지시를 행하는 경우는 개설의뢰인과 지시인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²⁴⁾

20) 後藤守孝·橋本 徹,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1(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6호, 2010. 9, p.57.

21) M. M. Burjaq, “Guarantees and the URDG in the Arab World”, *DCInsight*, Vol.16, No.2, 2010. 4/6, p.14.

22) 後藤守孝·橋本 徹, 전계 주 20, p.58.

23) P. Andrieu, *op. cit.*, p.14.

24) R. Goode, “ICC approves revised rules on demand guarantees”, *DCInsight*, Vol.16, No.1, ICC, 2010. 1/3, p.3.

③ from의 해석

제3조 d항은 ‘from+날짜’의 해석이다. UCP 600에서는 두 종류의 해석이 있다. 즉, from이 선적기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기재된 날짜를 포함하고, 기일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용된 경우에는 기재된 날짜를 제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규칙에서는 “기재된 날짜를 포함한다.”라는 한 가지 해석 밖에 없다. 따라서 ‘60 days from B/L date’인 경우의 기간계산에 관하여 B/L date를 포함하여 계산(당일 산입)하는 점이 UCP 600의 해석(UCP 600에 있어서는 당일 불산입)과 다른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²⁵⁾

(3) 비서류조건

URDG 758의 개정 사항 중 혁신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비서류조건(non-documentary conditions)을 금하는 규정이다.²⁶⁾ 이는 종래 청구보증실무에서 보증상 비서류조건이 삽입되는 경우가 흔히 있었던 바, URDG 458에서는 그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신용장실무와 보증실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⁷⁾

여기에서 비서류조건이란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보증서 조건을 말한다. 비서류조건은 비록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시되는 것이 명확화 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보증서조건에 ‘① Beneficiary’s statement indicating contract number A 123’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② This Guarantee covers contract number A 123’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비교하여 보자.²⁸⁾

①의 경우에는 ‘contract number A 123’을 나타낸 서류(수익자의 진술서)의 제시를 보증서가 요구하고 있으며, 이 서류가 없는 경우는 보증서조건 불

25) 後藤守孝·橋本 徹, 전계 주 2, p.73.

26) L. Cullen, “A URDG 758 training course online”, *DCInsight*, Vol.16, No.4, ICC, 2010. 10/12, p.16.

27) 박세운·한기문·허해관, 전계논문, p.80.

28) 後藤守孝·橋本 徹, 전계 주 2, p.74.

일치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편 ②의 경우는 조건의 충족을 나타내는 서류를 보증서가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서류조건이며, 보증서에 조건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무시된다. 따라서 보증서가 요구한 서류 중에 ‘contract number A 123’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그 기재가 없는 것을 이유로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조건 불일치를 지적받는 일도 없다. 그렇지만 만일 서류 중에 ‘contract number XU-57C’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보증서 중의 데이터(contract number A 123)와 불일치하기 때문에 보증서 조건 불일치가 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두 조건도 비서류조건이지만 무시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날짜 또는 기간의 경과에 관계되는 조건과 둘째, 기한도래 사유(제2조) 및 보증서금액의 변동(제13조)의 규정과 같이 그 조건의 충족을 보증인 자신의 기록²⁹⁾ 또는 보증서에 명기된 지표(index)³⁰⁾로부터 결정가능한 조건이다.³¹⁾

요컨대 비서류조건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은행 입장에서 신중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화환신용장과 달리 청구보증은 제시서류가 간단하고 또한 그 특성상 화환신용장에 비해 비서류조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³²⁾

2. 지급 청구

(1) 각 지급청구의 독립성

UCP 600 제32조에서는 일정기간 내의 분할 사용이 신용장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 분할사용의 하나가 실행되지 않거나, 또는 일치하는 제시가

29) 보증인 자신의 기록은 보증은행이 보유한 은행계정으로의 일자 또는 지급을 말한다(G. Affaki, “URDG and UCP 600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CInsight*, Vol.14, No.3, ICC, 2008. 7/9, p.6.).

30) 지표(index)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상품시황정보회사가 공표하는 원유·천연가스의 거래참고가격의 지표와 통신사 홈페이지의 특정 페이지에 공표되는 지표 등이다.

31) 後藤守孝·橋本 徹, 전계 주 2, p.75.

32) 채진익, 전계논문, pp.128~129.

아닌 것을 이유로 거절을 당하면 그 부분 및 그 이후의 분할부분에 관하여 신용장이 무효로 된다. 이러한 UCP 600의 입장과는 반대로 본 규칙에서는 각각의 분할부분은 독립하고 있으므로 전에 사용된 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큰 차이가 있다(제18조 b항). 이와 같이 규정된 배경에는 보증서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보증으로서 개설되므로 어떤 분할사용부분의 청구가 행해지지 않은 것은 원인계약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때문에 이행되지 않은 이후의 분할부분에 관하여 보증서가 무효로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³³⁾

상술하면 본 규정은 실무상 중요하며 유익하다. 이 규정은 보증인이 지급 청구의 불일치를 간과하여 지급하고, 개설의뢰인도 간과하여 더욱이 보상에 응한 경우와 불일치를 발견한 보증인으로부터 개설의뢰인에게 그 수리의 가부를 조회한 결과 수리한다는 회답을 얻고, 동시에 개설의뢰인의 보상능력에 문제없다고 판단하여 불일치한 지급청구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보증에 기초하여 전과 동일한 불일치를 포함한 다른 지급청구가 후일 제시된 경우, 보증인이 이러한 지급청구를 거절가능인가의 여부에 관한 것인데, 답은 거절가능하다. 동 규정은 청구보증 거래가 개설의뢰인에 대한 보증인의 여신인 것과 거래실무를 감안한다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⁴⁾

(2) 일부청구 및 수차청구

일부청구(partial demand)란 보증금액 10만 달러의 보증서에 기초하는 7만 달러의 청구를 행하는 것과 같이 보증금액 전액에 미달하는 청구를 말한다. 따라서 ‘Partial demand prohibited’라는 표현은 청구금액은 보증금액과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대하여 수차청구(multiple demands)란 보증금액 10만 달러의 보증서에서 제1회째의 청구로서 7만 달러를 청구하고, 후에 제2회째의 청구로서 3만 달러를 청구하는 등의 복수 회

33) 後藤守孝·橋本 徹, “ICC請求拂保證統一規則(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の改訂について(下)”, 『銀行法務21』, No.720, 2010. 9, p.44.

34) 飯田勝人, 전제논문, p.50.

의 청구를 의미하며, ‘multiple demands prohibited’라는 표현은 청구가능한 회수가 1회뿐임을 의미한다.

또한 본 규칙에서는 보증이 수차청구를 금하고 있고 1회만의 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일부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소정기간마다의 상품/서비스의 제공계약 등에 관계되는 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서의 사용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의 청구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이행부분에 관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되므로 수차청구를 금지하는 조건은 삼가하여야 한다. 또한 보증인은 위험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금액의 상한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물게 명시된 금액에 부가하여 그것에 부수하는 이자, 비용에 관해서도 보증범위에 포함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금리와 비용이 예상외로 큰 금액이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금리, 비용 등을 포함한 총액을 보증금액의 상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⁵⁾

3. 통지 및 조건변경

(1) 보증서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

URDG 458에는 보증서의 통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URDG 758은 UCP 600에 준하여 통지에 관하여 많은 언급을 하고 있다.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통지은행을 경유하여 통지되지만, 보증서는 통지인을 경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통지인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³⁶⁾도 있다. 통지인을 경유하는 경우 통지인의 의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URDG 458에는 없었지만, URDG 758에는 UCP 600 제9조와 동 취지의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다.

통지인의 역할은 접수한 보증서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과 그 내용을 정확히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것에 한정되며, UCP에서 신용장의 통지은행과 같

35) 後藤守孝·橋本 徹,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4(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9호, 2010. 12, p.65.

36) 보증서 원본을 개설의뢰인/지시인 경우로 보증수혜자에게 교부 또는 보증인이 자신의 고객인 보증수혜자에게 보증서 원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이다.

이 확인과 매입의 역할은 상정되고 있지 않다. 더구나 URDG 758에서는 통지인을 이용하여 보증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에 관련하는 조건변경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보증서의 통지 시에 이용하였던 동일한 통지인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고 있다(제10조). UCP에서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시에 신용장의 통지 시에 이용한 통지은행과 동일한 통지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must)로 되어 있지만, 이 점이 보증서의 경우와 다르다.³⁷⁾

(2) 조건변경

URDG 458에는 보증서의 발급 후 조건변경에 관하여 자세한 명시내용이 없었지만, URDG 758에서는 UCP 600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수리, 거절 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음에 관한 일부 훌륭한 조율을 갖추고³⁸⁾ 이하와 같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통지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거절의 통보³⁹⁾를 행할 필요가 있다. 보증인은 수익자가 조건변경을 거절할 때까지는 조건변경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취급하므로(제11조 b항), 수익자가 거절의 통보를 하지 않고 조건변경 전의 보증서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한 경우, 보증인은 그 제시를 조건변경 후의 보증서조건 불일치로 간주하여 거절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UCP 600 제10조 c항의 규정과 상위하다.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익자가 조건변경의 승낙을 전달할 때까지는 그 조건변경 전의 신용장조건이 수익자에게 계속하여 유효하며, 수익자는 그 조건변경 거절의 전달을 하지 않고 조건변경 전의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보증수혜자로부터 조건변경의 승낙 또는 거절의 통보가 없이 보증인이 변경 후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의 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변경이 승낙된 것으로서 그 제시를 수리하지만, 조건변경 전의 조건에 기초하는 서류의 제시를 받은 경우에는 조건변경 후의 보증서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그 제시를 거절 가능하

37) 後藤守孝·橋本 徹, 전제 주 2, p.76.

38) L. Cullen, *op. cit.*, p.16.

39) 실무에서는 서면에 의한 거절의 통보가 이루어진다.

다.⁴⁰⁾

4. 불가항력 및 양도

(1) 불가항력

URDG 458에는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여 그 사이에 유효기일이 경과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불가항력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당사자는 보증수혜자였다.⁴¹⁾ 이것은 UCP 600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URDG 758은 불가항력 사건이 발생하여 유효기일이 경과되는 경우 유효기일로부터 30일 동안의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주고 있다(제26조).⁴²⁾ 동 규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단기간인 불가항력 사건의 경우에는 보증수혜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⁴³⁾ 동 규정은 수익자에게 엄격한 UCP 600의 규정⁴⁴⁾과 수익자에게 관대한 ISP 98 규정⁴⁵⁾의 중간적인 취급을 규정한 것이다.⁴⁶⁾

상술하면 불가항력에 관한 UCP 600 제36조는 개설은행 등 신용장에 관여하는 은행의 면책만을 규정하고, 그 후 뒤처리를 신용장 외에서 원인관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다. 이것에 대하여 본 규칙에서는 청구보증 유효기일의 자동연장과 그 후의 지급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구보증거

40) 後藤守孝·橋本 徹,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3(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8호, 2010. 11, p.73.

41) P. Andrie, *op. cit.*, p.15.

42) 한국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은행 보증서 통일규칙(URDG 758) 및 대외지급보증 업무 Guide』, 한국외환은행 외환업무부, 2010. 6, p.9.

43) P. Andrie, *op. cit.*, p.15.

44) UCP 600 제36조는 불가항력이 발생한다면 수익자는 제시가 불가능하며, 불가항력의 종료이전에 신용장의 유효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신용장은 무효로 되어 버린다.

45) ISP98 3·14에서는 불가항력의 종료 후 제시기간을 영업재개 후 30일간 연장한다고 하고 있다.

46) R. Goode, *supra note 24, op. cit.*, p.4.

래의 범위 내에서 특히 제시인의 역할을 하는 보증수혜자 등의 이익을 배려하고 있다. 만일 본조의 규정이 없는 경우이더라도 원인관계의 각 당사자는 결국 원인관계에 기초하는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며, 또는 의무의 이행을 강요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조의 규정은 합리적이라고 평가 가능하다.⁴⁷⁾

(2) 보증서의 양도와 대금의 양도

URDG 758은 URDG 458보다 보증서의 양도에 관하여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양도 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UCP 600에서는 양도절차를 행하는 은행으로서 양도은행과 개설은행을 규정하고 있지만, 본 규칙에서는 양도은행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인이 양도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된다. 보증서는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도시에 이용가능한 금액을 몇 회라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UCP와 달리 일부양도는 인정되지 않는 반면, 한 번 양도한 보증서를 다시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제33조).⁴⁸⁾

상술하면 보증은 그 금액만을 복수회 양도가능한 것을 규정하였다(제33조 a항). 이것은 UCP에서는 신용장금액의 일부의 양도(보증 금액이 10만 달러인 경우에, 10만 달러만의 양도)도 가능하지만(UCP 600 제38조 b항), 양도인으로부터 양도를 받은 양수인은 다시 다른 자(양수인이 된 A는 B에게)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UCP 600 제38조 d항 2문)과 크게 다른 규정이다.

양도인이 금액을 분할하여 복수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수평양도(horizontal transfer)라고 하며, 양도를 받은 양수인이 다시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수직양도(vertical transfer)라고 하는데, 본 규칙은 UCP가 금하고 있는 수직양도를 인정하는 한편, 보증의 일부양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액양도(위의 예에서 10만 달러)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보증 거래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⁴⁹⁾

47) 飯田勝人, 전계논문, p.53.

48) 後藤守孝·橋本 徹, 전계 주 33, p.46.

49) 飯田勝人, 전계논문, p.54.

IV. 결 론

URDG 458이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한 것에 비하여 URDG 758은 국제적인 규칙과 기대에 부응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⁵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주요한 근거로는 은행에서 보증을 다루는 사람들이 또한 회환신용장을 다룬다는 사실이다. URDG 758의 구조가 UCP 600의 형식 및 스타일과 유사하게 변화되었는데 이는 실무가들이 익숙한 형식 및 스타일로 보기 때문에 URDG 458보다는 훨씬 명확히 다양한 용어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⁵¹⁾

또한 은행원들이 URDG 758을 학습하는 과정 및 일상의 작업 절차를 적용하는 것을 상당히 손쉽게 하여 줄 수 있고,⁵²⁾ URDG 758의 원칙과 규정들을 청구보증의 본문에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 서류심사시간이 제5 은행영업일로 명확화 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⁵³⁾ 또한 URDG 458에서는 커버되지 않았던 통지, 조건변경 및 거절 등을 포함한 많은 실제적인 문제들이 URDG 758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⁵⁴⁾ 마지막으로 준거법 및 재판관할과 관련한 규정의 존재이다. 동 규정은 UCP 600 및 ISP 98에서는 규정되지 않고 있는데 동 규정으로 인하여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소송 건수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소송 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⁵⁾

50) G. Ransier, "The US marketplace and the URDG", *DCLInsight*, Vol.14, No.4, ICC, 2008. 10/12, p.18.

51) N. D. George, "URDG 758 : some reservations", *DCLInsight*, Vol.16, No.2, ICC, 2010. 4/6, p.10.

52) 그러나 기업들에게는 청구보증이 주로 지급 수단이 아니라, 기본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하면서 URDG 758을 UCP 600과 조화되도록 개정된 것은 부적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평적인 시각도 있다(C. M. Radtke, "The URDG revision : a CLP member's view", *DCLInsight*, Vol.15, No.2, ICC, 2009. 4/6, p.20.

53) S. Younger, "Israel welcomes the URDG 758", *DCLInsight*, Vol.17, No.1, ICC, 2011. 1/3, p.17.

54) P. Andrieu, *op. cit.*, p.14.

55) G. Ransier,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DCLInsight*, Vol.16, No.2, ICC, 2010. 4/6, p.13.

우리나라는 주요산업인 조선·중공업계가 선박·플랜트 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선수금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우리 업계는 청구보증에서 개설의뢰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증수혜자의 부당한 청구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지의 법률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URDG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URDG에 대한 연구 및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⁵⁶⁾에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더욱이 최근 한-EU FTA의 발효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유럽 간의 더 많은 국제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청구보증에 대한 보다 깊이있는 연구가 절실한 상황이다.⁵⁷⁾ 앞으로 URDG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 업계에서 보증 거래시 URDG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56) 박세운·한기문·허해관, 전계논문, p.74.

57) 정홍식, 전계논문, p.686.

참 고 문 헌

- 박석재, “국제 비즈니스 계약에서의 보증수단 및 유형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6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5. 5.
- _____,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법으로서의 UCP 500과 ISP98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3. 8.
- 박세운·한기문·허해관, “ICC 「청구보증통일규칙」 개정 동향-제3차 개정초안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4권 제4호, 한국무역학회, 2009. 8.
- 정홍식, “국제상업회의소(ICC)의 독립적 보증에 관한 통일규칙(URDG) 개정안 제3차 초안의 주요 내용”, 『경영법률』, 제20집 제1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10.
- 채진익, “URDG 하의 지급청구를 위한 제시요건과 그 일치성 기준”, 『무역상무연구』, 제50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11. 5.
- 한국외환은행 외환업무부 편, 『은행 보증서 통일규칙(URDG 758) 및 대외지급보증 업무 Guide』, 한국외환은행 외환업무부, 2010. 6.
- 經濟法令研究會 編, 『ゼミナール外為實務Q&A』, 經濟法令研究會, 2006. 11.
- 飯田勝人, “新「請求拂保證に關する統一規則(URDG758)」における重要條文の要旨」 『金融法務事情』, 제1899호, 2010. 6.
- 相澤吉晴, 『銀行保證狀[スタンドバイ信用狀]と國際私法』, 大學教育出版, 2003.
- 新堀 聰·椿 弘次, 『國際商務論の新展開』, 同文館出版, 2006. 12.
- 後藤守孝·橋本 徹,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4(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9호, 2010. 12.
- _____,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3(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8호, 2010. 11.
- _____,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2(ICC Uniform Rules

-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7호, 2010. 10.
- _____, “改訂請求拂保證統一規則の解説 1(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 『國際金融』, 제1216호, 2010. 9.
- _____, “ICC請求拂保證統一規則(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の改訂について(下)”, 『銀行法務21』, No.720, 2010. 9.
- _____, “ICC請求拂保證統一規則(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 略稱URDG758)の改訂について(上)”, 『銀行法務21』, No.719, 2010. 8.
- Affaki, G., “URDG and UCP 600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DCInsight*, Vol.14, No.3, ICC, 2008. 7/9.
- Andrle, P., “URDG 758 : a work in progress”, *DCInsight*, Vol.16, No.4, ICC, 2010. 10/12.
- Burjaq, M. M., “Guarantees and the URDG in the Arab World”, *DCInsight*, Vol.16, No.2, 2010. 4/6.
- Byrne, J. E., & Burman, H., “Introductory Note”, *International Law Materials*, Vol.35, 1996.
- Cullen, L., “A URDG 758 training course online”, *DCInsight*, Vol.16, No.4, ICC, 2010. 10/12.
- D'Arcy, L., Murray, C., & Cleave, B., *Schmitthoff's Export Trade*, 10th ed., Sweet & Maxwell, 2000.
- George, N. D., “URDG 758 : some reservations”, *DCInsight*, Vol.16, No.2, ICC, 2010. 4/6.
- Goode, R., “ICC approves revised rules on demand guarantees”, *DCInsight*, Vol.16, No.1, ICC, 2010. 1/3.
- _____,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shing S.A., 1992.
- Harfield, H., “Guarantees, Standby Letters of Credits, and Ugly Ducklings”, *Uniform Commercial Code Law Journal*, Vol.26,

1994.

Pearlman, S. J., "Types of Non-Trade Letters of Credit Used in Today's Marketplace", *A Practical Guide to Letters of Credit*, Executive Enterprises Publications Co. Inc., New York, 1990.

Radtke, C. M., "The URDG revision : a CLP member's view", *DCInsight*, Vol.15, No.2, ICC, 2009. 4/6.

Ransier, G., "URDG 758 has benefits for all parties", *DCInsight*, Vol.16, No.2, ICC, 2010. 4/6.

_____, "The US marketplace and the URDG", *DCInsight*, Vol.14, No.4, ICC, 2008. 10/12.

Younger, S., "Israel welcomes the URDG 758", *DCInsight*, Vol.17, No.1, ICC, 2011. 1/3.

ABSTRACT

A Study on the Main Contents of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URDG 758)

Park, Suk Jae

URDG 758 tracks UCP 600 in format and style. This makes it easy for practitioners to understand various terms with a lot more clarity than in URDG 458, since practitioners see things in a format and style they are accustomed to.

It is a fact that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w will prevail over the URDG 758. In many countries there is only limited written law concerning abstract guarantees; therefore any conflict between URDG 758 and the national law will be unlikely.

In many instances the instructing party is different from the applicant – the party whose obligation is supported by the guarantee. And provision for amendment is a new addition in URDG 758. Inspiration was taken from UCP 600 with some fine tuning: accept, reject or do nothing – and the implications of each of these. Chief among the innovations in the URDG 758 is the one banning non-documentary conditions.

The consensus is that the new URDG 758 is a major improvement on URDG 458 in both comprehensiveness of scope and contents of rules. The URDG 758 is likely to become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field of demand guarantees.

Key Words: URDG 758, Demand Guarantee, Dependent Guarantee, Guarantee